

## ●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-61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을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12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#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(이하 “화평법”)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“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(이하 “인체등유해성물질” )” 지정기준에 해당하여 신규 지정예정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고시하고자 함
-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평가한 결과를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, “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(화평법 시행령 별표1)”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에 관한 사항 고시

- [별표4] 가목(인체등유해성물질) 38종 신설(고유번호 “2026-1-1355” 란부터 “2026-1-1392” 란까지)

나. [별표4] 가목(인체등유해성물질)의 화학물질명칭 및 유해성분류 등 9종 개정

- 고유번호 “97-1-9의 소번호 3” 란의 화학물질명칭 등 물질 추가
- 고유번호 “97-1-90” 란 및 “97-1-140” 란의 화학물질명칭 정정
- 고유번호 “97-1-144” 란의 유해성분류(정정)에 따른 구분
- 고유번호 “97-1-399” 란의 CAS No. 추가
- 고유번호 “2021-1-1068” 란 및 “2021-1-1077” 란의 유해성분류 및 표시사항, M계수 추가
- 고유번호 “2010-1-609” 란 및 “2024-1-1222” 란의 UN No. 정정

다.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(법 제16조에 따른 표시)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(부칙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6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화학물질등록평가팀, 전화 032-560-8667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본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(www.nics.mcee.go.kr) 내 「알림마당-법령정보-안전원고시/예규/공고」에 게재되어 있음